

제18675호 2016. 1. 8.(금)

【대 통 령 령】

- 대통령령제26877호(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6
- 대통령령제26878호(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25

【부 령 령】

- 환경부령제635호(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36
- 해양수산부령제182호(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36

【고 시】

- 법무부고시제2016-1호(국적상실) 43
- 법무부고시제2016-2호(국적상실) 45
- 법무부고시제2016-3호(국적상실) 47
- 국방부고시제2016-2호(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50
- 국방부고시제2016-3호(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50
- 국방부고시제2016-4호(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51
- 국방부고시제2016-5호(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51
- 국방부고시제2016-6호(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51
- 국방부고시제2016-7호(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52
- 국방부고시제2016-8호(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52
- 국방부고시제2016-9호(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53
- 국방부고시제2016-10호(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54
- 국방부고시제2016-11호(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54
- 행정자치부고시제2016-4호(생활정보 열람서비스의 종류) 55
- 환경부고시제2016-1호(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개정) 56
- 환경부고시제2016-2호(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일부개정) 56
- 관세청고시제2016-2호(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57
- 문화재청고시제2016-1호(〈2016년도〉조사인력 등급별 인건비 기준단가) 60

(이면 계속)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호(하천공사준공)	6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416호(하천점용 허가)	7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417호(하천점용 허가)	7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418호(하천점용 허가)	7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420호(하천점용 허가)	72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호(하천점용 연장허가)	73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호(하천점용 연장허가)	73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호(하천점용 변경허가)	73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호(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74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5호(접도구역 지정)	75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6호(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75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7호(접도구역 지정)	78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6-1호(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78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호(사설항로표지 폐지)	79
○충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6-1호(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포함> 지정)	79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683호(전기용품안전기준 제정예고)	90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2호(한국산업표준 제정)	90

【공 고】

○인사혁신처공고제2016-15호(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91
○인사혁신처공고제2016-16호(2016년도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계획 추가<변경>)	92
○금융위원회공고제2016-6호(공시송달)	92
○금융위원회공고제2016-7호(금융투자업 등록)	93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6-1호(원자로조종면허<SRO, RO> 정지 및 취소처분)	93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2호(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 심의회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94
○통일부공고제2016-1호(남북교역·경협 관리업무 위탁)	95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6호(상세기준<개정>)	95
○보건복지부공고제2016-1호(비영리민간단체 등록)	98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583호(제1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2016~2020>)	98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호(신기술지정 신청)	99
○국토교통부공고제2016-2호(신기술지정 신청)	100
○국토교통부공고제2016-3호(신기술지정 신청)	101
○국토교통부공고제2016-4호(건축구조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102
○국토교통부공고제2016-5호(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03
○국토교통부공고제2016-9호(자산관리회사 설립인가 취소)	104
○대구지방고용노동청안동지청공고제2016-1호(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수리)	104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3호(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	105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1호(과태료처분 사전통지)	105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16-7호(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획 및 수탁자 모집)	106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6-1호(공시송달)	108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6-2호(공시송달)	108

1. 추진배경

- 건축자산의 체계적 보전·관리 및 활용을 위한 건축자산 진흥정책의 목표와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을 수립

2. 주요내용

□ 계획의 근거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자산 진흥을 위하여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을 담은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 계획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2016년 ~ 2020년 (5년)
- 내용적 범위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따라 다음의 주요사항을 포함
 - 건축자산 진흥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 건축자산 및 지역 건축문화 진흥 기반구축
 - 건축자산 진흥 관련 조사·연구·기술개발
 - 건축자산과 관련한 전문인력 양성
 - 건축자산의 홍보 및 국제교류
 - 건축자산에 대한 인식 제고 관련 건축문화교육

□ 계획의 주요 내용

- 비전 : 기억과 일상이 어우러진 건축, 풍요로운 삶의 자산
- 정책목표 및 실천과제
 - (건축자산의 가치 공감) 건축자산 총조사 지원, 건축자산 기초연구, 국민공감 확산
 - (생활 속에서 누리는 건축자산) 한옥 조성 확대,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 건축자산 활용 선도

3. 관련자료 열람방법

- 관련내용은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합니다.
 -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 기타 문의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79, 팩스 044-201-55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

나. 전화번호 : ① 02-3499-1686

2. 명칭 : 전자뇌관과 비 전기뇌관의 각각의 특성인 정밀시차와 무한단차를 조합·활용한 발파진동 및 기반암 손상 제어공법 (SUPEX Blasting Method)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전자뇌관과 비 전기뇌관의 각각의 특성인 정밀시차와 무한단차를 조합·활용한 공법으로 심발부 전자뇌관 적용을 통한 진동수준 저감과 최외곽부 전자뇌관 적용을 통한 기반암 손상영역 최소화를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활용목적 별로 구획된 영역에 선택적으로 전자뇌관을 적용하고 나머지 영역에는 비 전기뇌관을 적용하여 전자뇌관 적용에 따른 기술적 이점은 취하며 상대적으로 고가인 전자뇌관 사용량은 최소화시킨 발파공법이다.

<범위>

전자뇌관과 비 전기뇌관의 각각의 특성인 정밀시차와 무한단차를 조합·활용한 공법으로 공법의 활용 목적에 따라 전자뇌관을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나머지 영역에는 비 전기뇌관을 적용하여 발파로 인해 발생하는 진동수준을 저감하고 기반암 손상영역을 최소화 시키며 굴진하는 발파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9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6-2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주)포스코, ② 테크스타코리아(주), ③ (주)대한건설이엔지, ④ (주)한진중공업, ⑤ (주)포스코건설

나. 전화번호 : ① 032-200-2516, ② 02-6241-4316, ③ 031-699-4488, ④ 02-450-8757, ⑤ 032-748-1944